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538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성진, 정상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문성현, 김봉민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소외 C 명의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에 관한 2021. 5.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169,252,672원을 위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9,252,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25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F, G(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I아파트 및 J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에 대해 전세임대를 모집하는 것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실행내용이 신용정보조회에 반영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차주들 명의로 전세자금담보 대출을 이중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주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2018. 10. 15.경 H과 남양주시 I아파트 K호를 임차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L 주식회사 및 원고 회사에 ‘입금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각 대출신청을 한 후 L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은 H에 지급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로부터 2018. 10. 24. F 명의 계좌로 246,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동종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7,7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C 등은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기소되어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C는 징역 3년, F, G은 각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C는 2020. 5. 22. 소외 M, N(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7천 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20. 5. 25.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20. 6. 26. 잔금 중 169,252,729원(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매수인들이 사실상 인수하는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2020.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40533호로 C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14. 위 법원에서 매수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수한 것이어서 매수인들의 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수령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달리 이 사건 잔금을 수령할 법적 권한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수령은 C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직접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C의 채권자대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잔금 수령 권한 없이 이를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C의 의사에 기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입금받은 이상(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계약에 따른 수령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잔금을 입금받은 것이 C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즉,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잔금이 입금된 2020. 6. 29. 이전에 C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피해 3,457,77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위 갑 제27, 3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편취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잔금을 매수인들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잔금 상당을 증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위 추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2. 매수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진행하였으므로, 2020. 11. 12.경 C의 사해행위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2.에야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허용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상은 C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주장하는 대상은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이므로 그 각 취소의 대상이 서로 다르고, 원고가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즉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7호증의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들이 피고의 계좌로 매매잔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범위

그렇다면,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인 169,252,72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